

이 보도자료는 2020. 6. 22. 14:3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문공보관 박세현

전화 02-530-4780,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0. 6. 22.(월)

제 목

‘박사방 조직’,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1조 제1항)
-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 제7조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한 결과,
 - ‘박사방 조직’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임을 밝혀,
 - 조주빈, 강훈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우선 기소하고,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사기 등 개별 범행도 기소하였음
 - ※ 2명 구속 기소, 6명 성착취 범행으로 구속 중, 나머지 조직원 30명은 수사 중
- ☐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압수된 현금 1억 3,000만원, 가상화폐(전자지갑 15개) 등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음
- ☐ 피의자 동의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던 기존 방식에 더해, 영장을 통해 신속히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 방식을 도입·시행**하여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차단하였음
- ☐ 성착취물 유포·확산을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수사 중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도 성착취물 유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램
- ☐ 향후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반인권적 범행인 집단적 성착취 범행이 재발할 경우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여 엄정 처벌하겠음

I

피고인 및 주요 공소사실 요지

① 피고인

순번	성명	텔레그램 닉네임	나이, 직업	기존 처분 등
1	조주빈	박사	24세, 무직	'20. 4.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
2	강훈	부따	18세, 무직	'20. 5.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
3	A〇〇	김승민	26세, 무직	'20. 3.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
4	B〇〇	랄로	28세, 공무원	'20. 2.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
5	C〇〇	도널드푸틴	24세, 사회복무요원	'20. 1. 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 '20. 4. 13. 살인예비죄 등으로 추가 기소
6	D〇〇	태평양	16세, 학생	'20. 3.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구속 기소 '20. 4.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추가 기소
7	E〇〇	블루99	33세, 회사원	'20. 5. 25. 구속
8	F〇〇	오뎅	40세, 회사원	'20. 5. 25. 구속

② 주요 공소사실 요지

▪ 범죄단체 조직·활동

- 조주빈, 강훈, A〇〇, B〇〇는 조직원 9명과 함께 '19. 9.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 성착취물 제작·유포 역할,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여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조주빈, 강훈, A〇〇 등은 '19. 9. ~ '20. 2. 아동·청소년 16명 포함 74명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활동

▪ **범죄단체 가입·활동**

- C○○, D○○, E○○, F○○는 조직원 21명과 함께 '19. 11.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아동·청소년 포함 수십명의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활동

▪ **피고인 조주빈**

- 아동·청소년 피해자 8명의 성착취물 제작·배포
- 영리 목적으로 성인 피해자 39명의 성착취물 배포·전시
- 사회복지무요원 ○○○로부터 14명의 주소 등 개인정보 취득
- 피해자 △△△로부터 1,800만원, 피해자 ▽▽▽로부터 3,000만원 각 편취
- 마약이나 총기 판매 빙자하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866만원 편취
- 인터넷에 총 997회 마약 판매 광고

▪ **피고인 강훈**

-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성착취물 제작
-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5명의 성착취물 배포·전시
- 영리 목적으로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 배포·전시

▪ **피고인 D○○**

-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의 성착취물 배포·전시
- 영리 목적으로 성인 피해자 24명의 성착취물 배포·전시

▪ **피고인 E○○**

-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 및 성인 피해자 3명의 성착취물 제작·배포
- 7,42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피고인 F○○**

-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성착취물 제작·배포
- 27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II

수사 경과

- '20. 04. 13. 조주빈의 강간미수죄 등 개별 범행 구속 기소(피해자 26명)
- '20. 04. 24. 박사방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 범죄인지(총 36명)
- '20. 04. 28. 범죄집단 가입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 '20. 04. 28. 성착취물 피해자 48명에 대해 경찰 추가 송치
- '20. 05. 06. 강훈의 강제추행죄 등 개별 범행 구속 기소
- '20. 05. 08. 서울지방경찰청에 위 범죄집단 가입·활동 등 사건 수사지휘
- '20. 05. 25. E○○, F○○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등으로 최초 구속
- '20. 06. 04.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간담회
 - ※ n번방의 실체를 최초로 폭로한 '추적단 불꽃',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프로젝트 리셋' 등 유관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텔레그램 성착취 실태에 대한 의견 청취
- '20. 03. 25. ~ 06. 21. 검찰에서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총 98회 조사
 - ※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텔레그램 그룹방·채널방 별 용도, 성착취물 공유방의 생성·변천 과정, 박사방 개설, 회원모집 및 홍보방법, 회원 가입 및 탈퇴 절차, 지속적인 활동을 한 회원 범위, 운영방법, 내부규율, 구성원들의 역할분담, 활동 목적, 범행수익 취득 및 배분, 단속대비 활동 등 구체적 내용 조사
- '20. 06. 22. '박사방 조직' 핵심 구성원 8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기소(2명 구속 기소, 6명 개별 성착취 범행으로 구속 중)

① 범죄집단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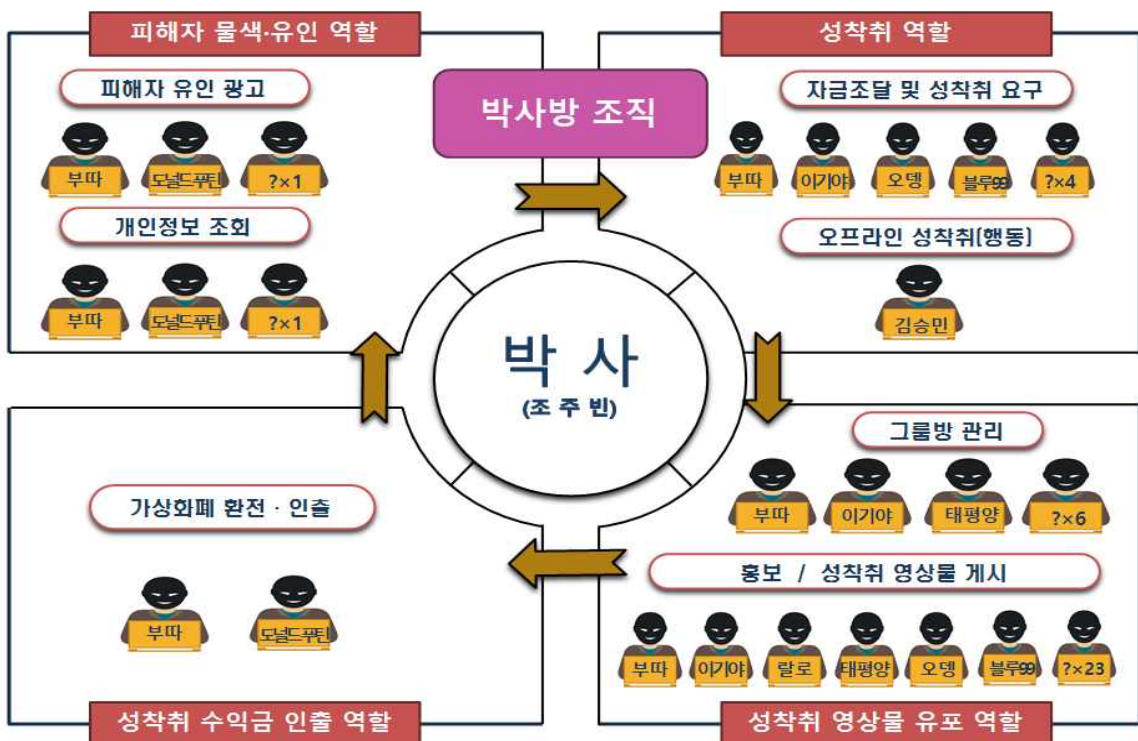
- [입법 취지] '00. 12. 가입한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¹⁾)의 입법 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13. 4.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나 위험성이 큰 집단을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 제114조에 '범죄집단' 처벌 규정 신설

범죄집단 성립 요건

- 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②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③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가 필요하고, 범죄단체와 달리 계속성과 지휘 통솔체계 불요²⁾

② '박사방 조직' 범죄집단 의율

- [주요 증거]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 텔레그램 채증 영상, 조주빈 등 관련자들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아래의 조직 구조와 특성 등 확인



1)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 인천지방법원 2019노360호 판결

- **[영업적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공동의 범행 목적]** 박사방 조직은 단순한 음란물 공유 차원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의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 후원금을 많이 제공하거나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지정하여 특정한 음란 자세를 주문하고 주문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입장 유도를 위한 홍보

조주빈이 성착취물과 선정적인 홍보 문구를 합성한 속칭 '홍보 뼈라'를 게시하면, 조직원들이 이를 유포한 다음 캡처 사진으로 유포 사실을 조주빈에게 인증받는 등으로 박사방 입장 유도를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하였음

-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유기적 결합 관계)]** 조주빈 혼자 또는 소규모 인원으로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로, 박사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각자 일부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유기적 결합 관계
 - 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그룹방 관리·홍보, 회원 관리, 범죄수익 인출 등으로 역할 분담
- **[범행의 규모 및 피해인 중대성]** 총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수십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였고, 그 중 유포 사실 확인된 성착취물만 1,000여개 이상
- **[온·오프라인 범죠희동 병행]** 박사방 조직은 온라인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오프라인 성착취 범행까지 반복적으로 시도
 - 온라인에서 '인간시장' 그룹방을 만들어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1:1로 연락하여 특정 자세를 요구할 수 있는 성착취 기회 제공 홍보
 - 조주빈이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최소 7회 이상 오프라인 성착취 범행을 시도하고 실제로 2회 이상 오프라인 성착취 범행이 저질러진 사실 확인
- **[장기간 계속된 범행]** 단기간의 일회적 범행이 아니라, 2019. 9. 초경 박사방 개설시부터 2020. 3. 16. 조주빈 검거시까지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 계속

- **[구체적 조직 운영 방법 1 : 가입 및 탈퇴]** 일반방은 가입·탈퇴가 자유로운 반면, 조직원들이 활동한 시민방은 가입시 신분증 사진 인증이나 일정 홍보 활동량 달성 등이 요구되고, 탈퇴시 신상공개 등 보복 조치

조직원 신상공개(속칭 '박제')

조주빈은 조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강훈(부따) 검거 후 배신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진, 신체 노출 사진 등의 신상을 공개하여 조직원 통제

*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범행을 저지르던 조직원들에게 익명성을 박탈하는 '박제'는 최고의 압박 수단으로 작용

- **[구체적 조직 운영 방법 2 : 분업 체계]** 조주빈은 그룹방 관리자 강훈(부따)이 검거되자 D○○(태평양)을 가입시켜 대체하는 등 일부 역할에 결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체 조직원을 모집·투입하여 범행 지속하는 분업 체계 확립

조직원 검거시 대응

① **[비대위 구성]** 조주빈은 강훈(부따)이 검거되자 그룹방 '비대위'를 개설하여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 대응 방안,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 ② **[약속된 메시지 전송]** C○○는 경찰에 단속되자 조주빈에게 미리 약속한 '1' 메시지를 전송

- **[구체적 조직 운영 방법 3 : 52개 이상 박사방 순차 운영]** 경찰·언론의 추적을 피하고자 총 52개 이상의 박사방(속칭 '대피소'³⁾ 포함)을 순차 운영하며, 가입시 홍보 뼈라를 유포하고 인증받도록 하여 박사방 입장자들을 공범화
 - 일반방은 생성·삭제가 빈번하게 반복되었으나, 시민방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성착취 조직의 구심점 역할
- **[구체적 조직 운영 방법 4 : 이익 배분]** 온라인 가담 조직원들에게는 피해자와의 오프라인 만남 및 특정한 자세 요구 기회, 미공개 성착취물에 대한 우선적 다운로드 권한 등의 이익을 제공
 - 가상화폐로 송금받은 범죄수익 환전 업무를 담당할 오프라인 가담 조직원 강훈, C○○에게는 수고비 명목의 금전 제공

금전적 이익 제공으로 조직 유지

박사방 성착취물은 다크웹 등에서 10만원 이상의 고액에 거래되고 있어, 다운로드 권한 부여는 조직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유인 효과

3) 기존 방이 신고되면 이를 삭제(폭파)하고 새로운 방을 만들 때까지 임시로 대기하도록 만든 방

- [구체적 조직 운영 방법 5 : 다양한 내부 규율] 눈팅 금지, 잠수 금지, 적대적 그룹방 활동 금지, 유료 성착취물 유포 금지, 활동 시간 공개, 박사 절대적 지지 및 비난 금지 등 다양한 내부 규율 존재

적대적 그룹방 집단 공격

- ① [적대적 그룹방 공격] 완장방 등 적대적 관계의 그룹방에 속칭 '도배'*를 하고, ② [완장방 운영자 신상공개] 완장방 운영자를 미행하고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속칭 '박제'를 하고, 이후 피해자를 시켜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

* 도배 : 채팅글, 홍보글, 욕설 등을 대량 게시하여 그룹방 운영을 마비시키는 행동

- [구체적 조직 운영 방법 6 : 조직 결속력 강화] ① 강훈(부따)이 검거되자 '부따 장례식' 그룹방을 개설하여 그리움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② 이원호(이기야)가 입대하자 '청운의 꿈 이기야' 채널을 개설하여 환송 메시지를 작성·공유

두려움의 존재로 균림한 박사

조주빈은 조직폭력배 그림과 조직원 닉네임을 합성한 조직도에서 박사를 수괴로 표현하였고,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유포할 수 있는 박사를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

- [구체적 조직 운영 방법 7 : 조직 보호] ① 고액방 입장, 성착취 기회 제공 등의 상품을 내걸어 박사방 취재 기자의 자녀 사진을 구한 다음 이를 공개하고, ② '박사나라 시민 이상 계층 건드리는 새끼는 시간 내서 잡아 조집니다. 모든 텔레인들은 사리세요'라는 조직보호 경고 메시지 게시

③ 성착취 범죄집단에 대한 엄정 대응

- [가담자 엄정 처벌] 박사방 사건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철저히 짓밟은 전세계 유례가 없는 신종 성범죄로, 유사 규모의 성착취 범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집단 의율을 통해 죄에 상응한 처벌 필요
- 성착취물 제작 등 성착취에 직접 가담한 경우는 물론, 성착취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유인, 성착취 유포 및 홍보, 범죄수익금 인출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집단가입·활동으로 의율

사이버 공간에서 반사회적 인격체들로 구성된 범죄집단의 폭력성

-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비대면성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현실세계의 자아와 별개의 반사회적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집단적 공격 성향에 쉽사리 동조·참여하는 행태로 인한 범죄현상이 심심치 않게 발생
- 텔레그램, 가상화폐 등으로 익명성이 더 강화된 사이버 공간에서 '40대 폭력배'라는 위압적 이미지로 이중 생활을 해온 수괴 조주빈과 박사방 조직화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받은 핵심 활동자들 중심으로 박사방 조직은 장기간에 걸쳐 온라인을 터전삼아 새로운 피해자와 n차 피해를 양산하며 체계화된 유기적 범죄집단으로 발전
- 범죄집단화된 박사방 조직은 (1)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를 노출한 엽기적 자세를 요구하고, (2) 성착취 피해자들의 성착취물 공개를 위한 인기 투표를 주동하고, (3) 오프라인 성착취를 저지른 조직원에 대해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여 범죄 소감을 공유하는 등의 집단 활동을 하였는데,
 - 이는 핵심 조직원들의 온라인에서의 반사회적 인격체가 인격 살해 수준의 범행을 일종의 유희로 여길 정도로 집단적 폭력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태

- [성착취물 확산 방지 행위 적극 대응] 성착취물 유포를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에 대해 관련 자료 채증,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등 혐의로 적극 수사 중
-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단기간의 일회적 성착취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 연속된 수십건의 성착취 범행이 결합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확인
 - 범죄집단 의율을 통해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계속된 범행의 범죄수익 일체를 환수하여 범행 동기 차단

IV

범죄수익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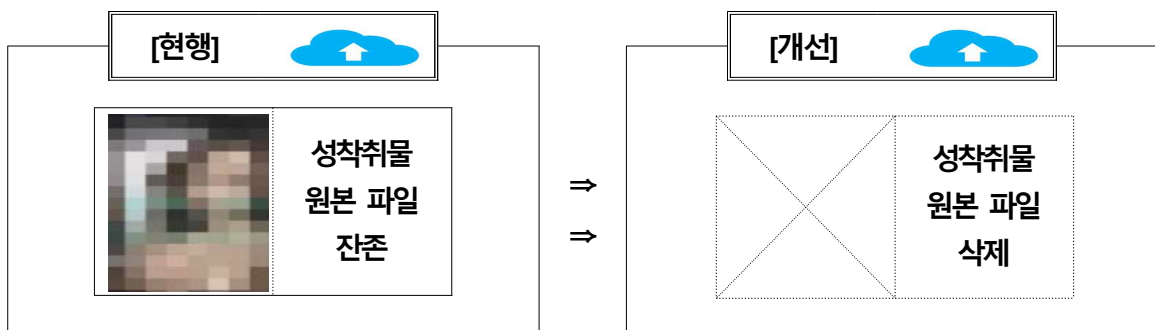
- [1차 몰수보전] 가상화폐 전자지갑 15개, 예금, 주식에 대한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청구하여 인용, [추징보전] 압수된 현금 1억 3,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하여 인용, [2차 몰수보전] 조주빈 휴대폰에서 추가로 확인된 가상화폐 전자지갑들 중 잔고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청구

[몰수보전 의의] 조주빈의 비협조로 가상화폐 지갑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몰수보전 인용된 최초 사례 (현재까지는 개인키 확보된 상황에서 청구 및 인용)

V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 도입

- [현행 방식] 현재 법원은 성착취물에 대해 일반 디지털 증거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해오는 방식의 압수만 인정
 - 피의자 동의를 얻어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한계
- [개선 방식] 이에 당청은 클라우드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하여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
 - ※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 대해서도 성착취물 파일 삭제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요청
 - 피의자 동의와 무관하게 클라우드에서 신속히 원본 파일을 삭제할 수 있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차단



VI

향후 계획

향후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적 성착취 범행에 대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극 의율하여 엄단하고, 이를 방치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에 대하여는 국내외 회사를 막론하고 형사책임을 적극 묻도록 하겠음

- 추가로 확인되는 '박사방 조직' 공범들에 대하여는 범죄집단으로 의율하여 계속 수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한 아동 성착취물 확산을 방치한 메신저 운용사에 대한 수사도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계속 진행하겠음
- 경찰과 협업하여 텔레그램 박사방 등 참여자,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박사방 조직'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범행자금 세탁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종결하겠음
- 불법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통한 영상물 삭제, 개명과 주민번호 변경 대리 등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음 ☐